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김성원·이종배·안상훈

이인선 • 박충권 • 김태호

조승환 · 임이자 · 송석준

김종양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 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 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 하는데 그쳤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책무임.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 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 장할 책무를 부여함.

-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 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안 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 라. 중요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안 제17조·제 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1조)

위원회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 수립·변경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심 충조사 종료 시, 관리시설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시 등의 경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 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 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 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 시함.
 -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

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 0조)
 -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 함.
 -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사. 관리기반 조성(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ㆍ제39조)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운영함.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안 제36 조 및 제37조)
 -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공람, 설명회·토론회, 공청회 등을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로 하여금 원자력발 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 활동 감시에 협력하도록 함.
 - 3) 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 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시 행하도록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밖에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 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본다.
-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저장"이란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5. "처분"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인수·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 다만,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
 ·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는 시설
- 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8.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개발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 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공론

- 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제 규범 및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체계를 구축·확보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 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 취소에 관한 사항
- 3. 관리시설의 건설 · 운영에 관한 사항
-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인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 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 2. 관리시설의 부지 조사·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 3. 관리시설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 4.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 장시설은 2045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안에 관한 사항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 · 전망 및 저장 · 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 3.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4.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진홍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도・시・특별자 치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 ⑦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

- 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8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부지적합성 조사의 목적・일정 등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
- 2. 부지적합성 조사의 절차 · 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3.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4.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심부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후보부지가 인접한 다른 시·군·구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 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 의를 위하여 부지 적합성, 관리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 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 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 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심 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 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

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3.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 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 4.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 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7. 그 밖에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 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위원회는 관리사업 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 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관리시설유치 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

- 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지원금
-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 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 2. 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 3.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 4.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처분시설을 설계·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수 있다.
 - 1.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관리시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학적 특성,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해진 경우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 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 제3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리시설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2. 관리시설의 점검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 조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관리사업자는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피·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

우

-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 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원자력 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1. 온라인 정보공개,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한 주민 공고·공 람
- 2.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토론회
-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의견수렴 방법
-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 ⑧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하다)
 - 2. 지원금을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하는 금액(이하 "구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 3.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역별 지원금은 해당 구역의 면적, 인구 및 부지내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④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역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직접지원사업은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 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직접지원사업: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사업
-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 5. 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공단의 업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39조(기금의 사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원자력진흥법」 제17 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 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특별지원금 및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 ⑥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있다.
-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 2. 제2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의 직원
 - 2. 제44조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

제6장 벌칙

-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47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8조(벌칙) ① 관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운영 및 폐쇄 후 관리를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의 위반행위를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또

- 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부지내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내저장시설에도 적용한 다.
- 제5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제7조제1 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통상자 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또는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